

2025년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안)

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현대화로 효율적인 임업 경영을 유도하고자 산림소득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4. 16.

산 립 청 장



I

사업별 공모 내용

□ 2025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억원)

사업명	예산 규모				지원조건(%) (국:지:자)	신청 규모 (총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380	152	76	152		
산림작물생산단지	250	100	50	100	40:20:40	(노지재배) 1억~5억원 이하 (시설재배) 1억~7억원 이하
산림복합경영단지	130	52	26	52	40:20:40	1억~5억원 이하

* '25년 예산요구(안)으로 기재부, 국회 등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1~2년간 분할지원

□ 공모 기간 : 2024. 4. 22. ~ 6. 21.(61일간)

□ 신청 자격 :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자격별 세부기준 >

- 사업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 중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이하 '임업후계자 등')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및 제5호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 "참여" : 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을 적용
- ※ 자격, 실적 등은 사업신청일(마감일 6.21) 기준으로 확인
 ※ 4~5페이지의 증빙서류 참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 「보조금법」 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

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뚝은감 : (사)한국뚝은감협회(02-2080-6352)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군 담당자)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유사자금의 개념으로,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 등)에 투자되는 것을 말하며(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대상으로 함(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권한이 있는 재정이 지원되는 사업). 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5년간 이전 지원성과를 평가하여 최대 3회까지 지원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적용

◆ **산림소득분야(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모사업으로 지원(준공기준)받은 이후 3년(2024년 1월 1일 기준)이 지나지 않은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 단체**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에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지,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가 포함된 경우**

* 숲가꾸기 사업 중 풀베기, 덩굴류제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린 나무가꾸기는 준공 후 3년이 경과하고 추가 숲가꾸기가 필요한 지역은 가능

□ 지원대상 품목(공통)

종류(79개)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감(뚝은감)·잣·호두·대추·은행·도토리·개암·머루·다래·산딸기·복분자딸기·석류·돌베
버섯류(8개)	표고·송이·목이·석이·능이·싸리·꽃송이버섯·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참나물·두릅·원추리·산마늘·고려영경귀(곤드레)·고비·어수리·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삼주·참쑥·시호·작약·천마·산양삼·결명자·구절초·약모밀·당귀·천궁·하수오·감초·독활·잔대·백운불·마
약용류(20개)	오미자·오갈피나무·산수유나무·구기자나무·두충나무·헛개나무·옴나무·참죽나무·산초나무·초피나무·옻나무·골담초·산겨릅나무·산사나무·느릅나무·황칠나무·꾸지뽕나무·마가목·화살나무·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자생란·조경수·분재·잔디·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II

응모 방법 및 제출 서류

□ 응모 방법(사업 신청자 → 시·군·구 산림부서 → 시·도)

- 사업신청자는 공모사업 신청서(붙임 1) 및 계획서(붙임 7)를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 → 시·군·구에서는 신청서 및 계획서를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전자결재 공문)

* 사업장(산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제출 서류

<신청자 → 시·군·구>

-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붙임 1) 및 사업계획서(붙임 7)
- 첨부·증빙서류

- 임업후계자 등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생산자단체 현황·운영 실적 등 :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 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참여' 증명서류 (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 6>에 따른 지원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지 확보가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대상토지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이거나 임대받은 토지여야 하며,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단, 임업후계자 등 개인에 한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단, 당해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목이 아니더라도 개별사업 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임업후계자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①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자부담금 확보**가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 (재배경력 확인 서류) 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세금계산서·납품 확인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임업경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시·군·구 → 시·도> * 사업 관련 신청·검토·확인 등 자료 보관 : 지자체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및 농식품사업 이력서 1부(붙임1, 2)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및 사업성과 평가서 1부(붙임3, 4)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3부(붙임5)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붙임6)

(5) 사업별 계획서 3부(붙임7)

(6) 해당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관련 증빙자료

- 관련사업 육성대책, 전문가 컨설팅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및 사업관련 사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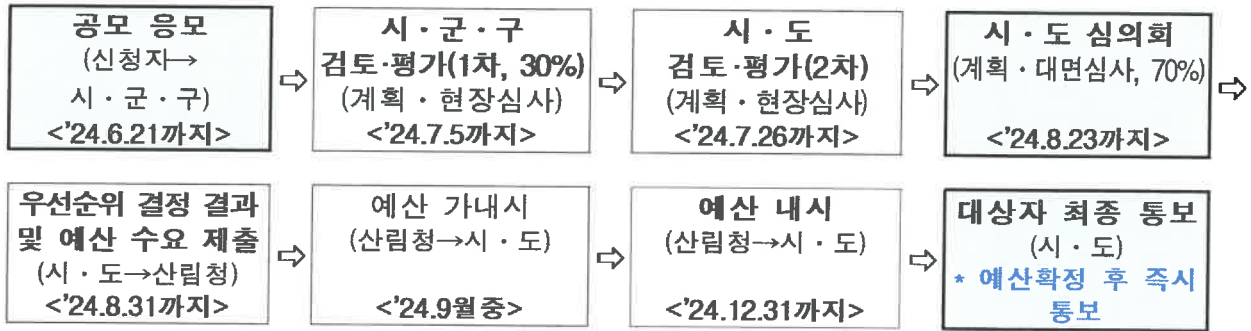
□ 제출 방법

○ 사업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산림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제출서류 일체)

○ 시·군·구는 시·도에 관련서류 일체를 전자 공문으로 제출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 추진 절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시·도는 관련 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 (외부전문가 3분의 2 이상)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 위원회 구성은 산림소득 전문가(산림기술사, 한국임업진흥원 등)를 반드시 포함 하되, 성별·지역별·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
- 시·군·구에서 제출한 평가 점수(30%)와 시·도 심의회에서 평가한 점수(70%)를 합산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

□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사업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열람

-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는 신청자 요청 시 공개
 - * 예산확정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통보

IV

참고(주의) 사항

-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추진
 - '24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25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승인 후 추진 가능
 - *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내역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
-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임업후계자 등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 유통·가공시설은 지원 제외
- 사업연도 교부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지연 또는 행정사항 미이행시 보조사업이 취소 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정산 등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한 '예치형'으로 추진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제3항
-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은 보조금 관계 법령을 우선적으로 따르며, 지자체에 계약을 위탁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계약법령을 따름
 - *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제1항 등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4]
-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지는 중요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

1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 지원 규모

- 예산액 : 국고 100억 원(1~2년 분할 지원 가능) * 자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간 결정
* '25년 예산요구(안)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집단지화·현대화

□ 공모 내용

○ 품목별 신청 기준 면적

- 산나물·약용·약초·수실·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 버섯류 : (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개소 이상
(시설 : 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1,650㎡/개소 이상

- 관상산림식물류 : (시설) 1,000㎡/개소 이상, (노지) 10,000㎡/개소 이상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 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면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예시) 약용류·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약용류 25,000㎡/개소 이상, 버섯류 3,300㎡/개소 이상이어야 함.

○ 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하, (시설재배) 1억원 ~ 7억원 이하

○ 지원대상 사업; <붙임 8>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 유통·가공시설은 지원 제외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등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톱밥배지 생산관련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필요시)' 또는 통상실시 등을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 송이산가꾸기는 낙엽굵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등 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 저장·건조시설

구 분	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시설규모(연면적) 100㎡ 이하로,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100백만원 미만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총 사업비는 설계·감리비(8% 이하), 기반 조성비(55% 이상), 식재 인건비(10% 이하), 종자·묘목 구입비(20% 이하), 기타 부대비(7% 이하) 등으로 구성

-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감리 선임
- * 설계·감리비는 예산 편성지침의 공사부문·공사비에 따른 요율 적용 가능
-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하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 <붙임 6>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하여 작성
-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 산양삼 단지 경우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자금 지원조건 : 전문기관(한국 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 (총 사업비 2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하로 지원)
-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정산보고서 검증 등에 소요 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이 가능. 다만, 인·허가 및 측량 비용 등은 지원 안됨.

□ 사업 추진 방법

- 선정된 사업자는 '24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단가, 세부사업내역 등을 '25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재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사전승인 후 설계 등 사업 추진
- ※ 「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 품셈」 활용 : 요율 및 타 분야 지침관련 사항은 현행화 활용
- ※ 사업 추진 중 규모, 사업비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받고 시행

2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 지원 규모

- 예 산 액 : 국고 52억원(1~2년간 분할 지원) * 자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간 결정
* '25년 예산요구(안)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사업 목적

-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 등 산림사업을 통해 숲을 가꾸면서, 하층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이 가능하도록 복합경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 대상지 전체에 숲가꾸기 사업 및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 공모 내용

- 신청 기준 면적 : 복합경영이 가능한 연결된 산림으로 품목별 신청 기준 면적을 충족

○ 품목별 신청 기준 면적

- 산나물·약용·약초·수실·수목부산물류 : 25,000m²/개소 이상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 버섯류 : (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m²/개소 이상

- 관상산림식물류 : 10,000m²/개소 이상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 *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가 가능한 사업지만 대상으로 인정하며, 전체 면적에 숲가꾸기 사업을 계획·실행하고,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를 계획·실행해야 함
 - 모두베기 실행지는 대상지에서 제외하며, 조림이 완료된 경우 포함 가능
 - 숲가꾸기는 기존 입목에 대한 것이며, 해당 공모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이 아님
 -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지는 산림작물생산단지로 신청(어린나무가꾸기 준공 후 3년이 경과하고 추가 숲가꾸기가 필요한 지역은 가능)
-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또는 연결지에서 숲가꾸기 사업(모두베기 아님)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부서와 사전 협의 후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이행

- 이 경우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1억원 이상 ~ 5억원 이하(1~2년간 분할지원)
- 지원대상 사업(숲가꾸기 + 생산기반) ; <붙임 8>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 유통·가공시설은 지원 제외
 -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솜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 * 해당 공모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비용은 지원 대상 아님 : 숲가꾸기 사업 대상 아님
 - * 산림자원육성·관리(농특) 예산의 '숲가꾸기사업'을 이미 완료한 임지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원
 - *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없이 하층의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하려는 경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임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 및 종근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 *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활용하여 재배를 하려는 경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대상 아님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

※ 저장·건조시설

구 분	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시설규모(연면적) 100㎡ 이하로,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100백만원 미만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총 사업비 중 20% 이하로 숲가꾸기(솜아베기,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가능하며, 잔액(총사업비 80% 이상) 기준으로 기반 조성비(55% 이상), 설계·감리비(8% 이하), 식재인건비(10%이하), 종자·묘목구입비(20% 이하), 기타 부대비(7% 이하) 내에서 구성
 -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숲가꾸기 사업은 가급적 사업시행전 농특예산 '숲가꾸기'와 연계하여 선행)
 - *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감리 선임

- * 설계·감리비는 예산 편성지침의 공사부문·공사비에 따른 요율 적용 가능
-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하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 <붙임 6>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하여 작성
-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 산양삼 단지 경우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자금 지원조건 : 전문기관(한국 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를 총 사업비 2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하로 지원
-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정산보고서 검증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이 가능. 다만, 인·허가 및 측량 비용 등은 지원 안됨.

□ 사업 추진 방법

- 선정된 사업자는 '24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단가, 세부사업내역 등을 '25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숲가꾸기 비율 제외) 추진코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재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사전승인 후 설계 등 사업추진
 - * 숲가꾸기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시행지침」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 품셈」을 참고하고 요율 등은 당해연도 것을 적용
 - * 사업 추진 중 규모, 사업비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받고 시행

- 붙임
1. 산림소득사업 공모신청서 1부.
 2.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1부.
 3. 사업성과 평가서 1부.
 4.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5.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1부.
 6.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7.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각 1부.
 - (7-1)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계획서
 - (7-2)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사업계획서
 8.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1부.